

2026. 9.

EU 유럽사법재판소, 유효한 지역차단조치 및 VPN 우회 시 공중전달의 성립과 귀속 기준 제시 (CJEU, Judgement of 09.07.2026 C-788/24, Anne Frank Fonds)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연구원
박희영

1. 개요

저작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별로 존속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어느 회원국에서는 저작권이 소멸하였으나 다른 회원국에서는 여전히 보호되는 저작물을 인터넷에 공개할 경우, 보호존속국에서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보호국 이용자가 VPN 등을 이용하여 지역차단조치(Geoblocking)를 우회할 수 있다면, 보호국에서도 공중전달(정보사회지침 제3조 제1항)이 성립하는지, 그 전달은 저작물 공개자와 VPN 사업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도 쟁점이 된다.

유럽사법재판소(CJEU)는 2026년 7월 9일, 최신 기술수준에 부합하고 보호존속국에서의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기에 적합한 지역차단조치가 설치되어 있다면, VPN 등을 통한 우회 가능성만으로 그 국가에서 공중전달이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다.¹⁾ 반대로 조치가 유효하지 않아 공중전달이 성립한다면, 그 전달은 저작물을 인터넷에 공개한 자에게 귀속되고 VPN 사업자에게는 귀속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정보사회지침 제6조 제3항의 기술적 조치의 ‘유효성’을 공중전달의 대상인 공중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 주요내용

1) 사실관계 및 국내 소송 경과

Anne Frank는 1942년부터 1944년까지 홀로코스트에 관한 증언을 담은 일기를 남겼다. 부친 Otto Frank는 1947년 그 유고를 출간하고 1963년 Anne Frank Fonds (이하 “기금”)를 설립하였다. Otto Frank 사후 기금은 Anne Frank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되었다.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의 2015년 12월 23일 확정판결에 따르면, Anne Frank의 저작물 일부는 네덜란드에서 2037년까지 보호되지만 벨기에 등 다른 회원국에서는 이미 저작권이 소멸하였다.

1) CJEU, Judgment of 9 July 2026, C-788/24, Anne Frank Fonds.

2021년 9월 말 안네 프랑크 재단(Anne Frank Stichting), 네덜란드 왕립학술원 및 역사문헌연구협회의 주도로, 벨기에에 등록된 역사문헌연구협회가 도메인을 보유한 웹사이트에서 Anne Frank 필사본의 네덜란드어 학술판이 무상으로 공개되었다. 이들은 저작물이 여전히 보호되는 네덜란드 등에서의 접속을 차단하는 지역차단조치를 설치하였다. 또한 저작권 소멸국에서 접속하는 이용자에게 자신이 해당 국가에서 접속하고 있다고 선언하도록 하고, 그 선언이 거짓이면 기술적 조치를 우회하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기금은 공개 중단을 요구한 후 네덜란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제1심과 항소심은 피고들이 네덜란드에서의 접근을 방지하거나 어렵게 하기 위한 적절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하였다. 기금이 상고하자 네덜란드 최고법원은 유럽사법재판소에 선결재판을 제청하였다.

2) 제청질문 및 법적 쟁점

첫 번째 질문은 인터넷상 저작물 공개가 특정 국가에서 공중전달로 평가되기 위해 그 국가의 공중을 향하여야 하는지를 묻는다. 두 번째 질문은 최신 기술수준의 지역차단조치를 VPN 등으로 우회할 수 있는 경우에도 보호국에서 공중전달이 성립하는지, 이용자의 우회 의사와 능력 및 추가 조치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묻는다. 세 번째 질문은 VPN에 의한 우회 가능성 때문에 보호국에서 공중전달이 성립한다고 보는 경우, 그 전달이 저작물 공개자와 VPN 사업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묻는다.

핵심 쟁점은 유효한 지역차단조치가 공중전달의 대상인 공중을 한정할 수 있는지, 단순한 우회 가능성이 조치의 유효성을 부정하는지, 유효하지 않은 조치로 인한 공중전달의 귀속주체가 누구인지이다.

3) 사법재판소 법무관의 견해

Rantos 법무관은 특정 국가의 공중을 향한 지향성이 공중전달의 독립적 요건은 아니지만, 유효한 지역차단조치가 설치되어 있다면 VPN을 통한 우회 가능성만으로 보호국에서 공중전달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²⁾ VPN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을 제공하는 자가 아니므로 공중전달의 주체가 아니지만, 보호국의 저작물에 대한 위법한 접근을 적극적으로 조장하는 경우에는 달리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사법재판소는 유효한 지역차단조치와 VPN 사업자에 관한 결론의 큰 방향에서는 법무관과 일치하였으나, VPN 사업자의 적극적 조장에 관한 법무관의 예외적 언급은 판결에 포함하지 않았다.

4)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내용

(1) 첫째 및 둘째 제청 질문

2) 박희영, VPN을 통한 지역 차단 조치 우회와 공중전달 - ‘안네 프랑크 일기’ 사건(C-788/24)에 관한 CJEU 법무관 견해의 분석 및 전망 -, 이슈리포트 2026.2.

사법재판소는 첫째 및 둘째 질문을 병합하여, 저작권 소멸국에서 무상 공개된 저작물에 지역차단조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보호국 이용자가 VPN으로 이를 우회할 수 있는 경우 보호국에서 공중전달이 성립하는지를 판단하였다.

재판소는 공중전달 개념이 ‘전달행위’와 ‘공중에 대한 전달’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고 전제하였다. 전달행위의 판단에서는 행위자의 중심적 역할과 행위의 의도성이 중요하다. 즉 자신의 관여가 없으면 이용자가 원칙적으로 저작물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결과를 인식하면서 접근을 제공한 경우 전달행위가 인정된다.

재판소는 이어 2021년 3월 9일의 소위 ‘프레이밍 판결’(VG Bild-Kunst)³⁾의 법리를 본건에 유추적용하였다. 저작권자가 유효한 기술적 조치를 통해 접근을 제한하면 이는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공중을 특정 범위로 한정하려는 의사의 표현이다. 마찬가지로 어느 회원국에서는 저작권이 소멸하였으나 다른 회원국에서는 보호되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는 보호존속국에서 웹사이트에 접속하려는 이용자를 제외하고, 저작권 소멸국에서 접속하는 이용자에게만 접근을 허용할 수 있도록 유효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저작권 소멸국의 이용자에게만 접근을 제공하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IP 주소에 따른 지역차단조치는 정보사회지침 제6조 제3항의 기술적 조치에 해당한다. 그 유효성은 절대적인 차단 여부가 아니라 비례원칙에 따라 판단되며, 조치가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한 범위를 넘지 않는지, 보다 덜 제한적인 대체조치가 동등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기술발전과 우회 가능성, 저작권의 속지주의원칙, 대체조치의 비용과 기술적·실무적 실행가능성 및 기본권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본건과 같은 경우 지역차단조치는 최신 기술수준에 부합하고 보호국에서의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기에 적합하면 유효하다.

VPN 등으로 우회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지역차단조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이유로 최신 기술수준의 조치까지 무효로 본다면 저작권 소멸국에서의 자유롭고 무상인 접근이 현저히 제한되고, 저작권에 과도한 지역적 범위가 부여된다. 도서관 단말기, 구독 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한 제한적 접근이 권리자를 더 강하게 보호한다는 사정도 지역차단조치를 무효로 만들지 않는다. 이러한 대체조치는 저작권 소멸국의 공중이 누려야 할 자유롭고 무상인 접근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이용자가 저작권 소멸국에서 접속하고 있다고 선언하도록 한 경고시스템은, 접근 여부를 이용자의 진실한 답변에 의존시키므로 그 자체로 유효한 기술적 조치가 아니다. 다만 지역차단조치 자체가 최신 기술수준에 부합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3) CJEU, Judgment of 09.03.2021, C-392/19, VG Bild-Kunst. 저작권자의 허락 하에 어느 웹사이트에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된 저작물을, 저작권자가 취하였거나 취하도록 한 프레이밍 방지 보호조치를 우회하여 제3자의 웹사이트에 프레이밍(Framing) 기법으로 삽입하는 것은 정보사회지침 제3조 제1항의 공중전달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건이다. 저작권자가 유효한 기술적 조치를 통해 접근을 제한한 경우 이는 저작물의 공중을 특정 웹사이트 이용자로 한정하려는 의사의 표시이며, 따라서 그 조치를 우회하여 접근하게 된 자는 “새로운 공중”(neues Publikum)에 해당한다는 것이 그 논거이다.

따라서 최신 기술수준에 부합하는 유효한 지역차단조치가 설치되었다면, 보호국 이용자가 VPN 등으로 이를 우회할 수 있더라도 보호국에서 공중전달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 경우 보호국 이용자는 공개자가 접근을 제공하려고 한 공중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 지역차단조치가 최신 기술수준에 부합하는지는 네덜란드 최고법원이 판단하여야 한다.

(2) 셋째 제청 질문

사법재판소는 세 번째 질문을 지역차단조치가 유효하지 않아 보호국에서 공중전달이 성립하는 경우의 귀속 문제로 재구성하였다. 공중전달의 성립은 단순한 우회 가능성이 아니라 조치의 유효성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공개자가 유효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공중전달은 저작물을 인터넷에 공개한 자에게 귀속된다. 반면 VPN은 이용자가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으로서, 그 사업자는 최종이용자에게 특정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직접 제공하지 않는다. VPN 서비스가 보호저작물에 대한 접근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사업자가 그 접근 자체에 관여하지 않는 이상 공중전달에서 중심적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전달을 가능하게 하는 설비의 단순 제공은 그 자체로 전달이 아니라는 지침 전문 제27항과도 부합한다.⁴⁾

따라서 지역차단조치가 유효하지 않아 공중전달이 성립한다면 그 전달은 저작물 공개자에게 귀속되고, VPN 또는 유사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귀속되지 않는다.

3.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첫째, 판결은 지침 제6조 제3항의 기술적 조치의 유효성을 제3조 제1항의 공중전달 판단에 연결하였다. 유효한 기술적 조치는 공개자가 접근을 허용하려는 공중의 범위를 표시하며, 그 결과 차단대상 지역의 이용자는 공중전달의 대상인 공중에서 제외된다. 이는 앞서 언급한 프레이밍 판결의 법리를 저작권 보호기간이 회원국별로 다른 상황으로 확장한 것이다.

둘째, 재판소는 기술적 조치의 ‘우회 가능성’과 ‘무효성’을 구별하였다. 최신 기술수준과 목적적합성이 핵심 기준이며, 우회 가능성은 기술발전, 비용, 실행가능성 및 비례성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된다.

셋째, 판결은 권리자의 지식재산권과 저작권 소멸국에서 저작물을 자유롭게 무상으로 제공·이용할 이익 사이의 균형을 강조하였다. 우회 가능성만으로 공중전달을 인정하면 저작권 소멸국에서의 온라인 공개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보호국의 저작권에 과도한 지역적 효력이 부여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Directive 2001/29/EC 전문 제27항: “전달을 가능하게 하거나 실현하게 하는 설비의 단순한 제공은 그 자체로 이 지침상의 전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는 WIPO 저작권조약(WCT) 제8조에 관한 합의성명(Agreed Statement)에서 유래한 것이다.

넷째, 재판소는 본건과 같이 이용자에게 합법적인 기술적 수단을 제공할 뿐 특정 저작물에 대한 접근 자체를 제공하거나 이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VPN 사업자는 지침 제3조 제1항에 따른 공중전달행위의 주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한국 저작권법에서도 공중송신권, 특히 전송권의 침해를 판단할 때 지역차단조치가 송신대상인 공중의 범위를 한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접근통제조치에 관한 제104조의2의 유효성 개념을 침해 성립 판단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에 관해서도 비교법적 참고가 될 수 있다.

또한 국내에서 저작권이 소멸한 저작물을 온라인으로 공개하면서 보호존속국의 접근을 차단하는 경우, 본판결의 유효한 기술적 조치를 통한 의사표시와 기본권의 적정한 균형에 관한 법리가 참고될 수 있다. VPN 사업자에 관한 판단 역시 직접적인 공중송신행위의 귀속과 중개서비스 제공자의 별도 책임을 구별하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최신 기술수준의 구체적 내용과 우회 위험을 상쇄할 수 있는 요소는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본건의 지역차단조치가 실제로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지도 네덜란드 최고법원이 판단하여야 한다. 향후 기술발전에 따라 요구되는 조치의 수준과 저작권 소멸국에서의 정보 접근 보장 사이의 균형이 계속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 유럽사법재판소 판결문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62024CJ0788>).
- Niederländer dürfen Online-Ausgabe von Anne Franks Tagebuch lesen. beck-aktuell, 09.07.2026 (<https://www.beck-aktuell.de/node/201661>).
- EuGH sieht Geoblocking als wirksame Schutzmaßnahme, Legal Tribune Online, 09.07.2026 (https://www.lto.de/persistent/a_id/60391).
- 박희영, VPN을 통한 지역 차단 조치 우회와 공중전달 - ‘안네 프랑크 일기’ 사건(C-788/24)에 관한 CJEU 법무관 견해의 분석 및 전망 -, 이슈리포트 2026.2.